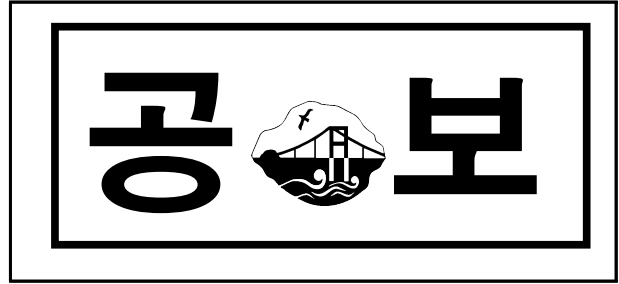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2호 2024. 4. 30.(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38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739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4
남해군 조례 제2740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741호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9
남해군 조례 제2742호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남해군 조례 제2743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남해군 조례 제2744호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18
남해군 조례 제2745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20
남해군 조례 제2746호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32
남해군 조례 제2747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남해군 조례 제2748호 남해군 티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5
남해군 조례 제2749호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51
남해군 조례 제2750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33호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	56
남해군 규칙 제1234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8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63호 남해군설계심사위원회 규정 폐지훈령	63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38호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65
남해군 고시 제2024-41호 소규모수도시설 인가폐지 고시	69
남해군 고시 제2024-42호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 변경 허가 고시	70
남해군 고시 제2024-43호 지족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	7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633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신비천)	72
남해군 공고 제2024-634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염해천)	73
남해군 공고 제2024-635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염해천)	74
남해군 공고 제2024-636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염해천)	75
남해군 공고 제2024-637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염해천)	76
남해군 공고 제2024-641호 남해군 금고 지정 공고	77
남해군 공고 제2024-643호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78
남해군 공고 제2024-661호 입법예고(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4
남해군 공고 제2024-675호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5
남해군 공고 제2024-676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99
남해군 공고 제2024-678호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02
남해군 공고 제2024-680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104
남해군 공고 제2024-685호 2024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05
남해군 공고 제2024-697호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07
남해군 공고 제2024-706호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113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38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조(「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 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군수” 로 한다.

제3조(「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업종” 이란” 을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 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5조(「남해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0미터” 를 “300미터” 로, “300미터” 를 “600미터” 로 한다.

제6조(「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다.

제7조(「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8조(「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9조(「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 이내에 변상”을 “변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변상완료 시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의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3일 이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39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협회의 설치 및 기능)”을 “(지속가능발전 협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
 4.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 협의회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 등 지속가능한”을 “지속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제4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를 “분과위원회”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매년” 을 “매년 8월까지” 로, “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전에” 를 “소요 예산 내역을” 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협의회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40호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 를 “12세”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만 12세” 를 “12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41호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자전거 보험 가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對人)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 군수는 군민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42호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 중 “필요한 경관지침” 을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 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별표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 지구 내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4.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5. 층수가 2층 미만이고 연면적 330㎡ 미만의 건축물
 6.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사항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업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⑤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제3호 중 “경관지침”을 “제32조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로 한다.

제29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사전 검토 등) 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경관위원회 심의 전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경관심의 매뉴얼) 군수는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관위원회 자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제23조관련)

구 분	경관심의 대상		규모	
1.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연면적 1,000㎡ 이상	
	군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도서관, 복지회관, 예술회관, 박물관 등		
	군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여객선터미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화장시설	화장장, 납골당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일반 건축물	해안경관 관리지역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있는 육지지역의 신규조성 건축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이상	
	마을경관 관리지역	해발고도 80m 등고선 이하 전 지역의 신규조성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남해읍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중점경관관리구역	남해스포츠파크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독일마을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연면적 산정 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 “해안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군도 이상 도로 중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도로를 말한다.

남해군 조례 제2743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대한건축사협회남해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사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남해군 조례 제2744호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남해군수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조정 절차) 제2조에 따른 기본차령의 조정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남해군수”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경우 본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남해군 조례 제2745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관련 활동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4.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을 말한다.

제3조(해양레저 사업 추진)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교육, 체험 및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 시설 설치
3.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업 관련 편의 시설 설치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법인·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해양레저 대회개최 등) ① 군수는 국제, 전국 및 도 단위 해양레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대회개최 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해양레저산업시설의 명칭 및 위치) 해양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강신청 및 이용신청) ① 남해군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트 계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계류하려는 요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수강 또는 이용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수강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요트계류장 이용신청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⑤ 제2항의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에 관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제 제5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이용료) ① 제6조에 따른 수강신청 및 이용신청을 한 자는 승인 또는 허가 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③ 이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수강자 및 이용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이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용료 반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강 또는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 등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
5.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수강 및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요트계류장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육·체험 프로그램 또는 요트 계류장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사람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교육·체험 프로그램 또는 요트 계류장 신청에 따라 발급받은 수강증·허가증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강증·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요트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030번길 42-26에서 운영하던 요트학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소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운영 할 수 있다.

[별표 1]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5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물건 계류장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84-6번지 지선	
적량 계류장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997-22번지 지선	
적량요트클럽하우스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997-22번지	
해양낚시레저공원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78번지 지선	
조도 해상낚시터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 166번지 지선	
호도 해상낚시터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 210-10번지 지선	

[별표 2]

이용료등(제7조 관련)

1. 교육 수강료· 체험 이용료

○ 요트교육 수강료

구분	과 정	교육 일수	교육·체험 내용	수강료(원)	비고
당기 교육	당기요트 체험	1일	범장해장택강입출항 숙련	30,000/1인	
	당기요트 입문	2일	세일링 기초기술 숙련과정	50,000/1인	
	당기요트 숙련	3일	세일링 숙련인명구조 과정	60,000/1인	

○ 체험 이용료

구분	소요 시간	체험내용	체험료(원)	비 고
카약·카누	1시간	카약·카누 체험	20,000원/1인승 30,000원/2인승	
패들보드	1시간	패들보드 체험	20,000원/1인	
낚시	2시간	낚시 체험	20,000원/1인	해양낚시 레저공원 내
통발	2시간	통발 체험	20,000원/1인	

2. 조도·호도 낚시터 이용료

구분	이용내용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조도 낚시터	가두리 낚시체험	조도항 이용	일반	20,000원	○ 가두리 체험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마리 수: 3마리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마리수: 5마리 (4마리째부터 마리당 이용료 7,000원 추가) ※ 가두리 명시 어종 제외 제한 없음
			초등학생	10,000원	
		미조항 이용	일반	40,000원	
			초등학생	20,000원	
		낚시대 대여		10,000원	
호도 낚시터	낚시체험	호도항 이용	일반	20,000원	
			초등학생	10,000원	
		미조항 이용	일반	40,000원	
			초등학생	20,000원	
		낚시대 대여		10,000원	

3. 요트 계류장 이용료

시설별	사용구분	이 용 료		비고		
		규 격	금 액(원)			
물 건 계류장	일 시 사 용 (척 / 일)	길이 5m 미만	6,000			
		길이 5m 이상 7m 미만	10,000			
		길이 7m 이상 10m 미만	16,000			
		길이 10m 이상	24,000			
	상 시 사 용 (척 / 월)	길이 5m미만	100,000			
		길이 5m이상 6m미만	110,000			
		길이 6m이상 7m미만	13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60,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80,000			
		길이 9m이상 10m미만	200,000			
		길이 10m이상 11m미만	230,000			
		길이 11m이상 12m미만	260,000			
		길이 12m이상 13m미만	300,000			
		길이 13m이상 14m미만	320,000			
		길이 14m이상	별도협의			
		적 량 계류장	일 시 사 용 (척 / 일)	길이 7m미만	12,000	
				길이 7m이상 10m미만	15,000	

시설별	사용구분	이 용 료		비고	
		규 격	금 액(원)		
		길이 10m이상 12m미만	17,000		
		길이 12m이상	24,000		
		길이 14m 이상	별도협의		
	상 시 사 용 (척 / 월)	길이 7m미만	15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70,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90,000		
		길이 9m이상 10m미만	210,000		
		길이 10m이상 11m미만	240,000		
		길이 11m이상 12m미만	270,000		
		길이 12m이상 13m미만	310,000		
		길이 13m이상 14m미만	330,000		
		길이 14m 이상	별도협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위 계류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 선박의 폭이 넓어 옆 선석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계약한다. 			

[별표 3]

이용료등 감면범위(제8조 관련)

1. 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	감면비율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100%
남해군 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00%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50%

2. 체험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비율
남해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100%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50%
남해군 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50%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50%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 가족	50%

3. 요트 계류장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비율
국가, 경상남도 또는 남해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일시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단, 계류장 사용료를 연납(1년 계류비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	10%

※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함.

[별표 4]

이용료등 반환 기준(제9조 관련)

1.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낚시터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군수의 귀책 사유로 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 본인이 이용을 포기한 경우	이용 1일 전 취소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당일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50%

2. 요트 계류장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군수의 귀책 사유로 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용 만료일까지 사용 일수를 일(日)할 계산한 금액

남해군 조례 제2746호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캠핑장 시설) 캠핑장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라반
2. 카라반 사이트
3. 오토캠핑 사이트
4. 물놀이장
5. 매점
6. 관리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를 캠핑장 시설 이용 승인일 부터 24시간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일 이용 시에는 캠핑장 시설 이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③ 캠핑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추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승인받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승인받은 이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남해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 1.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2.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예약의 취소 등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운영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해에코촌 캠핑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5~6조 관련)

1. 이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시설구분	이용기준	비 수 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카라반	6인용	1동/1일	150,000	200,000	2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량제봉투 (20ℓ) 1매 지급 •전기,수도 사용료포함 •샤워장 이용포함
카라반 사이트	캠핑카	1면/1일	50,000	70,000	90,000	
	오토캠핑	1면/1일	35,000	50,000	60,000	
오토캠핑 사이트	야영테크 (m×m)	1면/1일	35,000	50,000	60,000	
물놀이장	1일 (9~18시)	시설이용자	무료			샤워장 이용포함
		방문객	5,000			
자전거	1시간	1인용	2,000		2,000	
	1시간	2인용	3,000		3,000	

※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2. 초과 기준 등 (단위 : 원)

구분	시 설 명	기준	초과 기준	추가이용료
이용시간 초과	카라반 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	1시간 미만	5,00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0,00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0,000
			4시간 이상	1일 이용료
이용인원 초과	카라반	6인/최대8인	1명당 (36개월이상)	10,000
	카라반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4인/최대6인		5,000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납부한 이용료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 배상 -납부한 이용료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20% 배상 -납부한 이용료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5~9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3~4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1~2일 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납부한 이용료의 90% 반환 -납부한 이용료의 50% 반환 -납부한 이용료의 30% 반환 -납부한 이용료 반환 불가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태풍 등에 의한 강풍(이용예정일 기상청 기상특보의 주의보 이상), 호우(강풍과 동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남해군 조례 제2747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가연성폐기물 “이란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7. “불연성폐기물 “이란 제6호에 따른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과” 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신고번호)이나” 를 “배출신고번호를 기재하거나” 로 한다.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군수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우수 폐기물 관리자 선정 및 포상
 - 2. 우수 폐기물 관리자 및 폐기물 관련 기관·단체 선진지 견학 경비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중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 관련)

[단위:원]

규격	일반용(가연성) 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ℓ	100	10	110
10 ℓ	200	20	220
20 ℓ	400	40	440
50 ℓ	1,001	99	1,100
규격	불연성 마대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10 ℓ	364	36	400
20 ℓ	546	54	600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	냉장고	900 l 이상	12,000	
		700 l 이상	10,000	
		500 l 이상	8,000	
		300 l 이상	6,000	
		300 l 미만	4,000	
		김치냉장고	6,000	
2	텔레비전	24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장식대	2,000	
3	세탁기	10kg 이상	6,000	
		10kg 미만	4,000	
4	냉·난방기	세로형(폭50cm당)	5,000	
		벽면부착용	4,000	
		환풍기(팬)	3,000	
5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3,000	
6	오븐렌지	폭1m 이상	4,000	
		폭1m 미만	2,000	
7	전자·전기·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8	가스렌지 후드	모든 규격	2,000	
9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1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11	난로	모든 규격	3,000	
12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13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14	VTR, 타자기	모든 규격	2,000	
15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6	선풍기	일반, 벽걸이	2,000	
		스탠드 대형	3,000	
17	전기밥솥(통)	모든 규격	2,000	
18	노트북	모든 규격	2,000	
19	컴퓨터	본체	3,000	
		프린터	2,000	
		모니터	2,000	
		키보드	1,000	
20	팩스기	모든 규격	2,000	
21	전자복사기	모든 규격	3,000	
22	러닝머신	모든 규격	8,000	
23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모든 규격	5,000	
24	오디오	폭1m 이상	4,000	
		폭1m 미만	3,000	
		스피커 1개당	1,000	
		장식장	2,000	
25	기타 소형가전	모든 규격	2,000	
26	보일러	폭 1m 이상	5,000	
		폭 1m 미만	3,000	
27	전기장판(옥매트)	2인용 이상	5,000	
		1인용	3,000	
28	장롱, 옷장	폭30cm당	3,000	
29	침대	2인용(돌침대)	25,000	
		1인용(돌침대)	20,000	
		2인용	20,000	
		2인용 매트리스	15,000	
		1인용	15,000	
		1인용 매트리스	10,000	
30	식탁	대리석 5인용 이상	15,000	
		대리석 4인용 이하	10,000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31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32	거실장	폭1.5m 이상	4,000	
		폭1.5m 미만	3,000	
33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34	서랍장	1단당	1,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35	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책장	폭1.5m 이상	6,000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36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2,000	
37	캐비닛	높이1.8m 이상	5,000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38	싱크대	찬장 1쪽당	4,000	
		1쪽당	3,000	
39	소파	4인용 이상	10,000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4,000	
40	의자	안마용	10,000	
		학생용	1,000	
		업소(사무)용	2,000	
41	피아노	어프라이트	15,000	
		그랜드	20,000	
		오르간	4,000	
42	쌀통	모든규격	2,000	
43	유리종목(거울, 액자)	m ² 당	1,000	
44	병풍	모든 규격	3,000	
45	문짝	0.9m×1.8m당	3,000	
46	자전거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47	유모차,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8	보행기	모든 규격	1,000	
49	물통(저수조)	5톤 이상	30,000	
		5톤 미만	20,000	
50	간판	입간판	2,000	
		0.6m×1.8m 미만	4,000	
		0.6m×1.8m 이상	7,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51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52	어항, 수족관 (가정용)	1m 이상	5,000	
		1m 미만	2,000	
53	변기	모든 규격	3,000	
54	욕조	모든 규격	5,000	
55	실버카	모든 규격	2,000	
56	카펫, 장판, 대자리	3.3㎡당	2,000	
57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58	칸막이 패널	1㎡ 이상	3,000	
		1㎡ 미만	2,000	
59	시계	입식용	2,000	
		벽걸이용	1,000	
60	이불	솜이불	3,000	
		홀이불(담요)	2,000	
61	쿠션, 베개	모든 규격	1,000	
62	의류 건조대	모든 규격	2,000	
63	옷걸이	스탠드형	2,000	
		벽걸이용	1,000	
64	블라인드	모든 규격	2,000	
65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66	창문틀	1m×1m당	2,000	
67	가방	일반가방	1,000	
		여행용	2,000	
		대형(골프, 낚시)	3,000	
68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1,000	
69	화분	모든 규격	1,000	
70	반려동물 구조물	개집	3,000	
		캣타워	3,000	
71	암물박스(물온박스)	4.5㎡ 1대당	60,000	
72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73	폐소화기	3.4kg 이상	3,000	
		3.4kg 미만	2,000	
74	마대(잡쓰레기 등)	10kg 당	2,000	
75	대야	50cm 미만	2,000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함.

남해군 조례 제2748호

남해군 티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티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티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티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티움센터 위치) 남해군 티움센터(이하 “티움센터” 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3으로 한다.

제3조(티움센터 시설물) 티움센터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사무실
2. 세미나실
3. 소회의실
4. 특산물판매장
5. 카페테리아
5. 공유오피스
7. 스튜디오
8. 전시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티움센터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티움센터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① 티움센터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정상운영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등) ① 퇴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퇴움센터 시설물 이용·변경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확인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의 우선순위) 퇴움센터 시설물의 이용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2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2. 농업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제9조(이용료 등) ① 퇴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100분의 100
- 2. 남해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100분의 100
-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100분의 50
- 4. 이용시작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을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0
- 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
- 3. 농어업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
-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11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퇴움센터 시설물의 이용확인을 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이용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때

제13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특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틱옴센터 시설물 이용료(제9조 관련)

1. 공유오피스 이용료

구분 시설명	이용기준	이용료	비 고
공유오피스	1회 (4시간)	20,000원	

2. 스튜디오 이용료

(단위:원)

구분	이용기준	이용료	
		평일	토/일/공휴일
스튜디오	1회 (2시간)	10,000	12,000

3.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 액	비 고
세미나실	오전	40,000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종일 09:00 ~ 18:00
	오후	40,000	
	종일	80,000	
소회의실	오전	20,000	* 준비·철수기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오후	20,000	
	종일	40,000	

※ 기본 이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 1. 기본 이용시간 : 1회 4시간 기준
- 2. 이용시간 초과 시 금액 산정방법

초과 이용시간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비고
1시간 미만	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회 이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1회 이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	1회 이용료의 100%를 가산	

남해군 조례 제2749호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근로 종사와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채류 방지 대책 마련
7. 남해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8.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방안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등록 및 마약 검사 비용
3.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절차에 드는 비용
4. 국내 입출국에 따른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
5. 근로활동 관련 교육비용
6. 근로활동 관련 번역 및 통역 비용
7. 숙소 환경개선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50호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9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33호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를 각각 “19세”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234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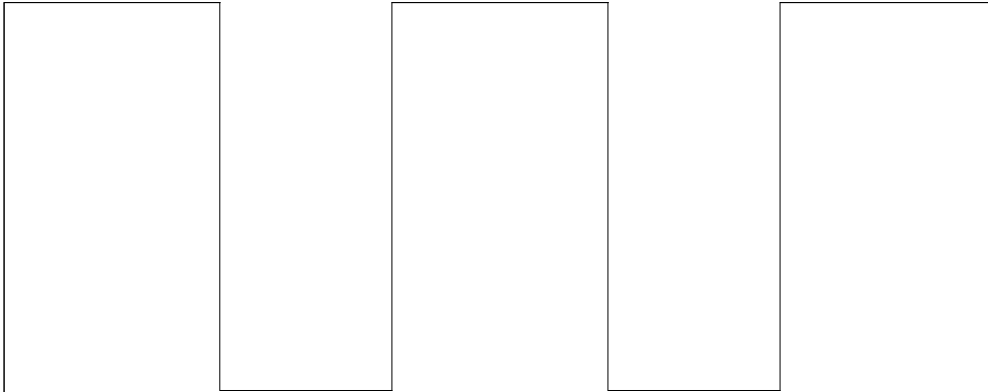
중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제3조 관련)

봉투 종류	용량	규격(cm)	용도	비고
가연성	5ℓ	26 × 46.5	일반용	
	10ℓ	33 × 56.5	일반용	
	20ℓ	42 × 69.5	일반용	
	50ℓ	56 × 91.5	일반용, 공공용	
불연성	10ℓ	32 × 55	일반용	
	20ℓ	40 × 65	일반용	

[별표 2]

중량제 봉투의 사양(제3조 관련)

일반용(가연성) 봉투



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

□ 불연성 마대

군 의 문 장

봉 투 용 량

용 도

주 의 사 항

군 의 명 칭

연 락 처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63호

남해군설계심사위원회규정 폐지훈령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설계심사위원회규정 폐지훈령을 발령한다.

2024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설계심사위원회규정 폐지훈령

남해군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 - 38호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의거해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지방하천 봉천에 대하여 하천의 3대 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갖는 생태복원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친수 하천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 사업개요

- 생태하천 복원 : L=1.23km, 자연형여울 8개소, 목교설치 2개소, 징검다리 3개소
생태탐방로(흙콘크리트, 테크로드) L=1,03km, 상태학습장 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및 서변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22년 11월 ~ 2025년 2월
-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불임참조
- 7.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비 고
사업비	9,000	4,500	1,080	3,420	

- 9. 예정공정표 : 설계도서 참고
-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준공 후 남해군에서 직접 관리
-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23. 8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남해군 재난안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현금지급
 - 보상가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가액의 산출평균치
-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합계	48필지		76,993	20,550						
변경	합계	42필지		76,768	20,325						
1	남해군 아산리	1435	천	35,869	11,527	국(국토교 홍부)					
2	남해군 아산리	1002-4	천	20	20	경상남도					
3	남해군 아산리	1002-3	천	49	49	경상남도					
4	남해군 아산리	1001-6	천	49	49	경상남도					
5	남해군 아산리	1000-2	답	116	116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화천로 **번길				
5	남해군 아산리	1000-2	답	116	116						제외
6	남해군 아산리	1000-1	천	374	374	경상남도					
7	남해군 아산리	999-1	천	38	38	경상남도					
8	남해군 아산리	1441	도	499	32	국(국토교 홍부)					
9	남해군 아산리	990-2	답	39	39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아산리 ***_*				
9	남해군 아산리	990-2	답	39	39						제외
10	남해군 아산리	990-1	천	162	162	경상남도					
11	남해군 아산리	1440	구	3,064	16	국(농림축 산식품부)					
12	남해군 아산리	989-1	천	39	39	경상남도					
13	남해군 아산리	989-2	답	39	39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아산리 ***_*				
13	남해군 아산리	989-2	답	39	39						제외
14	남해군 아산리	988	천	175	175	경상남도					
15	남해군 아산리	986-2	답	18	18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아산리 ***				
15	남해군 아산리	986-2	답	18	18						제외
16	남해군 아산리	986-1	천	148	148	경상남도					
17	남해군 아산리	986-3	답	5	5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아산리 ***				
17	남해군 아산리	986-3	답	5	5						제외
18	남해군 아산리	985	답	526	526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_**				
18	남해군 아산리	985	답	526	526	남해군					
19	남해군 아산리	313-4	답	97	97	남해군					
20	남해군 아산리	313-3	도	17	11	남해군					
21	남해군 아산리	1434	도	198	8	국(국토교 홍부)					
22	남해군 아산리	316-1	대	92	92	(주)신흥**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 동 *가 ***_**				
23	남해군 아산리	332-12	답	8	8	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아산리 ***				
						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사변리 **				
						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사변리 **				
						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 읍 사변리 **				
23	남해군 아산리	332-12	답	8	8					제외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남해군 아산리	329	도	86	86	정** 외 1 인	남변동 ***, 북변동 ***				
24	남해군 아산리	329	도	86	86	남해군					
25	남해군 아산리	1433	도	1,601	9	국(국토교 통부)					
26	남해군 아산리	900-1	천	301	139	경상남도					
27	남해군 아산리	900-3	천	73	73	경상남도					
28	남해군 아산리	1436	도	2,154	60	국(국토교 통부)					
29	남해군 아산리	946-3	천	146	146	경상남도					
30	남해군 아산리	946-2	천	393	393	경상남도					
31	남해군 아산리	962-1	천	169	169	경상남도					
32	남해군 아산리	962-2	천	116	116	경상남도					
33	남해군 아산리	963-1	천	71	71	경상남도					
34	남해군 아산리	319-4	천	179	179	경상남도					
35	남해군 아산리	319-5	천	29	29	경상남도					
36	남해군 아산리	318-1	답	14	14	(주)신흥**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 동 *가 ***_**				
37	남해군 아산리	1436-2	도	291	27	국(국토교 통부)					
38	남해군 아산리	424	천	436	436	남해군					
39	남해군 서변리	327-1	전	36	36	장**	북변동 ***_*				
39	남해군 서변리	327-1	전	36	36	남해군					
40	남해군 서변리	327-3	전	176	176	남해군					
41	남해군 서변리	329-3	전	41	41	남해군					
42	남해군 서변리	328	전	109	109	이**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 면 ****_**				
43	남해군 서변리	328-1	천	127	127	남해군					
44	남해군 서변리	333	천	499	499	김**	북변동 ***				
44	남해군 서변리	333	천	499	499			김**	북 변 동 ***	토 지 대 장 상 소 유 자	
45	남해군 서변리	490	도	4,484	35	국(기획재 정부)					
46	남해군 서변리	342-1	천	40	40	경상남도					
47	남해군 서변리	341-1	천	128	128	경상남도					
48	남해군 서변리	491	천	23,653	3,824	국(국토교 통부)					

남해군 고시 제2024 - 41호

소규모수도시설 인가폐지 고시

지방상수도 보급 등의 사유로 변동사항이 생긴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항,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1조(시설의 폐지)에 따라 변경인가 시행하고,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5.

남해군수

- 건명 : 소규모수도시설 인가폐지
- 고시일 : 2024년 4월 15일
- 폐지사유 : 지방상수도 보급 등의 사유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인가폐지)함.
- 시행대상

연번	읍·면	시설명	주소
1	남면	구미	남해군 남면 덕월리 917 (지하수)
2	설천면	덕신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41 (지하수)
3	고현면	동갈화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833 (지하수)
4	고현면	서갈화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775 (지하수)
5	남해읍	신촌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675 (지하수)
6	남해읍	야촌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467 (지하수)
7	서면	정포	남해군 서면 정포리 산 69-1 (지하수)
8	남해읍	평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143 (지하수+계곡수)
9	서면	금곡	남해군 서면 대정리 1529 (지하수)

- 시행일자 : 2024년 4월 8일

남해군 고시 제 2024 - 42 호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 변경 허가 고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 허가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변경)허가 내용

허가 번호	위판장 명 칭	관리자	소재지	시설규모(㎡)			위판장 시설 명세	비고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위판장 면 적		
08- 44	남해군수협 원천위판장	남해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53번길40 (신전리 1143-5)	3,390	296	296	경매장, 사무실, 기계실 등	위판장 위치 변경 (위판장 건립) (기존 : 이동면 신전리 1143-3, 89㎡)

남해군 고시 제2024 - 43호

지족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지족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6.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지족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 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3. 위치 :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4. 사업 기간 : 2020년 ~ 2024년
5. 총 사업비 : 6,940백만원 (국비4,858, 지방비2,082, 자부담34)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7. 사업 개요
 - 공통사업 : 물양장정비, 선착장 정비, 콘크리트 부잔교, PE부잔교, 방파제보강, 죽방렴데크 경관조명, 어항경관조명
 - 특화사업 : 어민행복센터 조성, 선셋 다기능센터, 1980테마간판 정비, 파크렛정원 조성, 야간주차거리 조성
8. 시행계획 열람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해양발전과(어항관리팀, 055-860-3076)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 - 63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 2962
소하천명		신비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594-15번지		
	면적	0.2512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영구		
	목적 및 사유	한전주 신설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63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이조0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
소하천명		염해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1804(남상리 660 인근)		
	면적	4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4. 4. 12. ~ 2029. 3. 31.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63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형0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강변로 ****
소하천명		염해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1804-5(남상리 657-3 인근)		
	면적	4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4. 4. 12. ~ 2029. 3. 31.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63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고해0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
소하천명		염해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1804(남상리 657-1 인근)		
	면적	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4. 4. 12. ~ 2029. 3. 31.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63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류희0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
소하천명		염해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1804(남상리 625-1 인근)		
	면적	7㎡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4. 4. 12. ~ 2029. 3. 31.		
	목적 및 사유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24 - 641호

남해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남해군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남 해 군 수

- 약정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금고(금융기관) 지정내용

구 분	금융기관	취 급 회 계
제1금고 (주금고)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회계■ 특별회계(5종)<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청사건립■ 기금(5종)<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고향사랑기금
제2금고 (부금고)	BNK경남은행 남해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5종)<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늘명품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3.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구 분	금융기관명	총 점
1순위(제1금고)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893.70점
2순위(제2금고)	BNK경남은행 남해지점	810.45점

남해군 공고 제2024 - 643호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남해 위케이션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설치 및 운영, 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운영시간 및 휴관, 이용료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이용 제한 규정(안 제8조)
- 마. 위탁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5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 2) 연락처 : 전화 055-860-8838, 팩스 055-860-375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 055-860-88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남해 위케이션 센터 서상: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87번길 28-12
- 남해 위케이션 센터 앵강: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105

제3조(센터의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그 밖에 군수가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제5조(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이용 신청일 기준 남해군 내 주소를 둔 경우
 2. 남해군 내 숙박업소 등을 이용한 경우
 3.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18.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 등을 위반할 때
-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4.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이용료(제5조 관련)

명 칭	기 준	요 금	비 고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서상	1인 1일	10,000원	
남해군 위케이션 센터 앵강	1인 1일	10,000원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사유로 예약취소 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나. 이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다.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라.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납부한 이용료의 75% 반환 -납부한 이용료의 50% 반환 -납부한 이용료 반환 불가	

남해군 공고 제2024 - 661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사항 정비(안 제1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사용허가일”로 개정

나. 공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근거 마련 및 완화 대상 확대(안 제27조)

－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신설(제5호~제7호)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공유
재산 대부료 경감 사항 조례로 신설(안 제31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4조)

－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금액 완화 및 분할납부 횟수 확대

4.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7. ~ 2024. 5. 8.(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남해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860-3152, FAX : 055-860-37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 중 “50명” 을 “30명” 으로, “50퍼센트” 를 “30퍼센트” 로 한다.

-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회” 를 “12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만원” 을 “5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 <u>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u> <u>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p>	<p>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 <u>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u></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5. (생 략)</p> <p>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 음)</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p> <p>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p> <p>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 른 자활기업</p> <p>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p> <p>④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30명 ----- ----- 30퍼센트 ----- -----</p>

신축하는 경우

⑤·⑥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생 략)

<신 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회-----

-----.

1. ----- 50만원-----

--

2.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령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 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 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 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 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 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2022. 4. 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2022. 4. 20.>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2022. 4. 20.>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

다. <개정 2020. 3. 31.>

② (이하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2020.12.22, 2023.8.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20.12.22>

[전문개정 2009.4.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 4. 2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차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남해군 공고 제2024 - 675호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목적(안 제1조)
- 정의 및 대상자 결정(안 제2조, 제3조)
- 지원물품 및 신청방법(안 제4조, 제5조)
- 지급결정 및 대상자 관리(안 제6조, 제7조)
- 업무의 위임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5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35, 팩스 055-860-389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전화 055-860-3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축하물품”이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장수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급물품)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 의무자, 그 밖에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① 군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676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2.

남 해 군 수

-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 참조
-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90,215.7	-	579,490,215.7	100.00			
육지부 합계		357,678,651.7	-	357,678,651.7	61.72			
도시지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거지역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2,569,007.0	0.44		
			자연녹지지역	7,783,595.0	7,783,595.0	1.34		
	관리지역	소계	137,559,673.1	증)5,887.0	137,565,560.1	23.73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57,782.1	감)25,517.0	47,232,265.1	8.15		
		생산관리지역	54,126,152.4	감)13,246.0	54,112,906.4	9.34		
		계획관리지역	36,175,738.6	증)44,650.0	36,220,388.6	6.24		
		농림지역	152,989,037.6	감)5,887.0	152,983,150.6	26.40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 기정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24-98호, 2024.03.21.)

1.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1.2. 現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840번지 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13,246.0	100.0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 도지역(생산관리지역, 보 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을 변경 하고자 함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25,517.0	100.0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5,887.0	100.0	

남해군 공고 제2024 - 678호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8.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 1. 25. ~ 2024.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7-1번지 외 175필지	하천정비 L=2,050m 교량설치 8개소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4. 4. 18.~2024. 5. 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4. 18.~2024. 5. 2.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680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04. 18.

남 해 군 수

- 아 래 -

가.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수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

다. 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

라. 출입기간 : 2024.04.29. ~ 보상업무종료시까지 (일출 후 ~ 일몰 전)

마. 출입목적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물건의 조사, 평가 및 측량 등

바. 출입대상토지 : “붙임” 출입할 토지의 내역 조서와 같음

사. 문 의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9)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051-465-3330)

남해군 공고 제2024 - 685호

2024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남 해 군 수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4년 빈집정비사업
- 나. 사업기간 : 2024. 4. ~ 예산소진 시까지
- 다. 사 업 량 : 40동(슬레이트지붕 37동, 일반지붕 3동)
- 라. 지원내용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 지원
- 마. 지원금액 : 슬레이트지붕 150만원, 일반지붕 200만원

□ 지원대상 및 자격

- 가.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 나. 지원자격
 - 1) 건축물의 실소유자
 - 2) 건축물 소유자 사망한 경우 건축물의 상속권자
(상속자가 여러명일 경우, 위임장을 통해 한명이 신청)
- 다. 지원제외 대상
 - 1) 소유권이 불명확한 경우
 - 2) 대상자 선정 이전 철거(정비)한 경우
 - 3) 해당 사업지 내 부분 철거

□ 신청방법

- 가. 신청기한 : ‘24. 4. ~ ’ 24. 12. (연도별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 나. 접수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 보템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
- 다. 제출서류

구분	첨부서류
신청시	소유권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기, 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 (대리인신청시) 소유주 동의서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소유자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상속자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사업동의서, 사업계획서, 건축물 대장,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선정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사업 전용 신규 보조금통장 사본 (은행 방문시 지방보조사업수행확인서 지참) 해체신고서 및 해체신고계획서(건축사 직인 필요,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에 제출) 1부.
완료시	보조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폐기물 처리송장, 공사내역서, 철거 전·중·후 사진, 공사내역서 도장 날인, (자부담 금액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액 입금된 통장사본) 각1부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가. 선정기준
 - 1)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철거하려는 자 우선 선정
 - 2) 소유권이 명확한 빈집을 철거하려는 자
 - 3) 건축 준공연도가 오래된 빈집을 철거하려는 자
 - 4) 도로변, 주택밀집지역 내 폐가를 철거하려는 자
 - 5) 기타 군수가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선정심의 :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다. 결과통보 :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정산
- ※ 유의사항 : 보템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 가입 및 신청
- 보조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내역서(업체도장 필), 공사 전·중·후 사진 첨부
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공사하지 않도록 하고, 첨부서류 미비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첨부.
- 사업완료 후 보조금은 기체출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로 이체하고 증명하여야 정산 가능하므로 다른 지급 수단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자부담 금액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청구서와 같이 제출해야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남해군 공고 제2024 - 697호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관리업무방식 개선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의무사항 내용을 관련 규칙에 반영

2)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업무는 차량관리부서에서 관리하되 총괄부서(남해군 재무과) 차원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 마련

나. 공용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는 조항 신설

3. 주요내용

가. 신규용어 “책임보험”, “정기검사” 용어의 뜻 신설(안 제2조)

나. 공용차량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기록(별지서식) 대장 신설(안 제4조)

다. 공용차량 지도·점검 사항 중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내용 신설(안 제5조)

라. 차량관리부서의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사항과 이와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하며, 총괄부서 차원의 주기적인 관리실태 점검 체계조항 신설
(안 제17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 2024. 4월 23일 ~ 2024. 5월 13일까지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5월 1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154,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055-860-31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끝.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
- 14.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4조에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차량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기록관리)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신 설></p> <p>6. (생 략)</p>	<p>제2조(용어의 뜻)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p> <p>14.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p> <p>제4조(기록관리) ----- ----- ----- 제7호-----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대장 (별지 제6호서식)</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5조(지도·점검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p> <p>1.·2. (생 략)</p> <p><신 설></p> <p>3. (생 략)</p>	<p>제5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7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p>	<p>제7조(배정요청)----- ----- -----</p>

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 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
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의 교체 및 사전구입 금지) ①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신 설>

-----제7호-
-----.

제14조(차량의 교체 및 사전구입 금지) --

-----제7호-----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
시 등)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
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 2024 - 706호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 추진배경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중소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마련 필요
- 추진목적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중대재해 예방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4. 4. 23.(화) ~ 5. 10.(금) 18:00까지
2. 사업 대상 : 남해군 관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개소
 - (우선지원)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 (지원제외)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기 지원 사업
 ※ 신청 사업장 미달 시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가능
3. 컨설팅 지원 내용
 - 안전보건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서류 작성 : 단순 상담 형식의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서류 작성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위험성 평가 포함)
 -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제공, 사업주와 업무 담당자 등 교육 지원
4. 컨설팅 지원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 및 공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한 컨설팅(1일 1개소 컨설팅, 사업체당 최대 5회 지원)
5. 지원 방법
 - 가. 신청 기간 : 2024. 4. 23.(화) ~ 5. 10.(금) 18:00까지
 - 나.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ris17thje@korea.kr), 팩스(860-3727)로 제출
 - 다.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6. 사업장 선정 :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산재발생 위험도 높은 사업장 우선순위 기준
7. 선정 통보 : 5. 13.(월) ~ 5. 14.(화) 선정된 사업장에 개별 연락
 - ※ 문의사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860-3622~3623)